

#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시행(2020. 11. 7.)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마스크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2판) 반영

2020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장

## 1. 처분당사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2. 처분내용

가. 아래의 ① 장소(행사)에서 ② 마스크를 ③ 올바르게 착용할 것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함

❖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범위는 별도의 행정조치 발령 없이 적용됨

## ① 시설·장소 등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단, 호흡기 질환 및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는 의무대상 적용 제외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는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를 의미함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②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 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착용법 관련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3. 처분근거

- 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개정 및 시행 '20.8.12, 추가 개정(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 '20.9.29.)
- 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시행 '20.10.13)

4. 처분사유

가. 마스크 착용을 통해 개인방역 강화 및 지역발생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함

5. 과태료 처분 적용기간 : 2020. 11. 13.(금)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법 시행 후 1개월의 계도기간 부여(2020. 11. 12.)

6. 과태료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및 금액

- (부과근거)

-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시행 '20.10.13.) : 붙임 1 참조

- (부과금액)

-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군수·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 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마. 과태료 부과 예외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대상)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어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인천시 자체 추가 조치(과태료 부과대상 예외)

#### ▶ (이.미용업)

- 얼굴 피부미용, 염색 등 머리카락 손질 또는 이용업 얼굴 면도행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 (결혼식장)

- 예식 시작 전, 로비에서 하객맞이용 및 신부대기실 사진·영상촬영을 예식 진행의 일부로 보고, 신랑·신부·혼주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로 인정함
- ※ 단, 로비, 신부대기실 등 촬영 중에는 말하지 않기 및 촬영 종료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신랑·신부·혼주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중에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인정
- 하객의 경우,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만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음
- ※ 단, 기념사진 촬영 종료 시, 하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7. 처분서의 교부신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 시,군,구 시설 및 행사 담당부서. 끝.

## 붙임 1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1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150	3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

## 붙임 2

##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 다음 FAQ는 등 안내서 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대상 장소, 행정명령(안), 마스크 종류, 착용법, 예외대상 및 예외상황 등)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1

###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중대본 발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됨
-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Q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Q5.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Q6.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7.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8.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Q9.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Q10.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요?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Q11.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됨
  -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2.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Q13.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Q14.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Q15.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Q16.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함
-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7.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

Q18.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2 지도·단속 관련 [대국민용]

Q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Q2.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Q3.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Q4.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붙임 3**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①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입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입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붙임 4**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①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벨트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과태료 부과 예외지 및 예외상황)

예외지	예외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li> <li>·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li> <li>·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li> <li>·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li> <li>·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li> <li>·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li> <li>·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입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입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li> <li>·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li> <li>·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li> <li>·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li> <li>·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li> <li>·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li> </ul>



코로나19 상황에서

#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KF94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이상 마스크**

-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sup>①</sup>과 기저질환자<sup>②</sup>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더운 여름철·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

①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②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미세입자 차단

호흡 용이성



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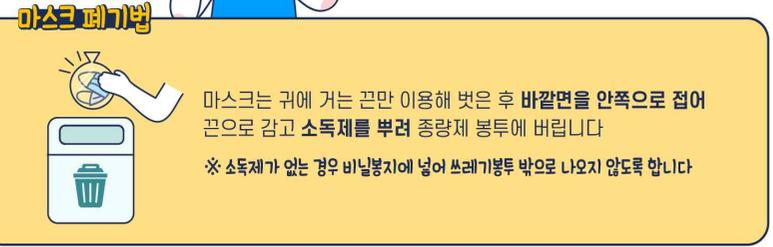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



-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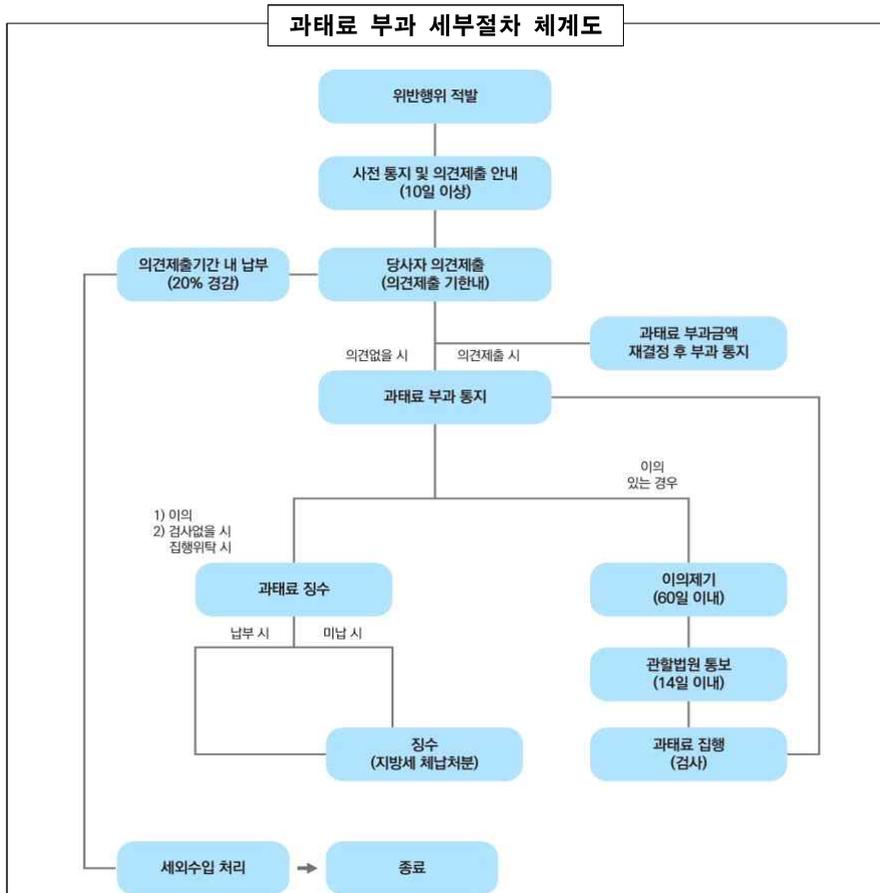
**붙임 6** 과태료 부과 세부절차(안)

○ 과태료 부과절차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제24조의 4에 따라 부과
- (계도중심) 과태료 처분 전 시정명령 → 불이행시 과태료 절차 진행



\*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3호)



**붙임 7** [서식] 위반확인서(안) 및 처분 사전통지서(안)

**위 반 확 인 서 ( 안 )**

성 명 : 000  
 주민등록번호 : 123456-\*\*\*\*\*  
 주 소 : 인천시 00구 00동 \*\*\*-\*\*  
 연 락 처 : 000-0000-\*\*\*\*

상기 본인은 20 년 00월 00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 . 00. 00
2. 위반장소 : 0000(00시 00구 00동 소재)
3. 근거법률 조항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4. 위반행위(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5. 특이사항(해당시) :

20 년 월 일

위반자(성명) : (서명)

단속원 소속 0000과 직급 000급 성명 (인)  
 소속 0000과 직급 000급 성명 (인)

0000000장 귀하

앞면

## 처분 사전통지서(안)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0000과 -

처분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당사자	성명				
	주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 20    년    월    일 (시간    :    )				
	위반행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위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input type="checkbox"/>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위반 과태료				
처분내용	과태료 금100,000원 (감경후 금액 80,000원) ※의견제출기한(위반일로부터 10일)에 자진납부시 20% 감경처리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팩스	

00000시 

뒷면

## 과태료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안내(안)

###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 의견제출기간(10일) 내에 납부하시면 20% 감경된 금액(80,000원)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 000청(0000과)로 문의하여 가상계좌를 안내 받은후 납부(단, 무통장입금은 CD기 이용시 해당은행에서만 입금 가능함) ※ 가상계좌는 단속 다음날부터 안내가 가능함  
▲고지서납부 - 과태료 고지서(20%감경)를 우편으로 받아서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당사자가 요청시 가능)
- 자진납부 기간내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입금 확인 후 별도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의견제출 안내

귀하께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위반으로 확인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3급이상), ▲미성년자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자료를 제출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5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위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0000-0000), 인터넷(000청 홈페이지)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000청 홈페이지 → 부서(0000과)홈페이지 → 민원서식(의견제출서)작성 → 전자민원실 접수  
※ 제출된 의견은 처리절차에 의해 결과를 통지함.
- 의견제출 기간 종료 및 제출된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납입고지서가 발부되고 주민등록주소지로 송달됩니다.  
※ 의견제출 사항 중 '마스크 착용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단순 의견사항은 수용되지 않음.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00청(0000과/02-00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